

제 225 호

1972. 4. 25

등록번호 : 제39호

등록년월일 : 1953년 6월 18일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장 양택식

편집인 : 공보실장 손활수

인쇄 :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

시 보

차 례

조 례 1

1. 시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이 양구보준공고는 이미
필립으로 되어있음
1972. 4. 25
서울특별시 시민과

시 보 세 분 목 차

1. 조 려

제 704 호 서울특별시립 직업보도원

설치조례중 개정조례

조 례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
직업보도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
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양택식

1972년 4월 25일

◎서울특별시조례제 704호

서울특별시립직업보도원

설치조례중개정조례

서울특별시립직업보도원 설치조례중 다
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후생시설에서 성장한 연장고
아를" 을 "후생시설 및 사설후생시
설에서 입원을 희망하는 자를"로" 집
단 난민의 자녀를"을 "불우한 소년
을"로 하고 "단서"를 삭제한다.

제2조 제2호를 삭제한다.

제3조 제3호 "프린트파"를 삭제하고
동조 제8호 "판금파"를 "철공파"
로 한다.

제4조, 제5조, 제6조를 다음과 같이
각각 신설한다.

제4조 직업보도원은 다음 사항을 관장
한다.

1. 입소자의 수용구호 및 생활지도
2. 입소자의 기술교도
3. 입소자의 수료후 취업알선

제5조 ①직업보도원에 원장을 두되 지
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.

②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원무를
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.

제6조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
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